

# 교통관리규정

제정 2020. 9. 1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안전한 캠퍼스 교통환경과 교통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 구성원의 교통안전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교통관리”라 함은 차량의 교내출입과 주차 및 운행 등에 관한 관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2. 공용차량은 본교가 소유하거나 상시로 관리·운영하는 모든 업무용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이용료 징수) 교내를 출입하는 차량과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필요시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 2 장 교통관리

제5조(업무 주관) 교통관리에 관한 업무는 총무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용자는 본교의 교통관리규정과 주관 부서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내에서 규정하는 안전속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경적을 울리거나 기타 연구와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출입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교내의 각 출입구에 차량 통제소 및 통제 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교내 주차는 지정된 주차구역 내에 한하며, 다른 차량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이용자는 도로표지판 또는 유도원의 안내에 따라 통행 및 주차하여야 한다.
5.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장애인 탑승 시에만 주차를 하여야 한다.
6.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없다.
7.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 화기 취급 또는 음주, 도박, 고성방가, 상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8. 주차장 시설물 또는 차량이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이용자에게 공지하거나 지시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통시설물 및 안내 문구) 주관부서에서는 교통 시설점검을 통하여 교차로개선, 주차장 확보, 표지판(광고판) 등 교통운영에 필요한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차량출입증 등록)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내구성원과 상시출입자는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아 차량 앞면에서 볼 수 있도록 비치한다. 차량출입증을 비치하지 않는 차량은 주차 위반 스티커 등 교통관리 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차량 교체 또는 퇴교(퇴사, 졸업 등) 등으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량출입증은 반납 또는 자체폐기를 하며, 신규 차량은 반드시 차량 정보를 재등록한다.

③ 강의교수전용 차량은 차량출입증에 강의교수전용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만 강의교수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④ 발급받은 차량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하거나 불법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차량 등록을 취소하거나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륜자동차 관리) ① 이륜자동차로 교내에 출입하는 자는 주관부서에 이륜자동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차량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관할 시/군/구에 등록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학내 출입을 할 수 없다.

③ 무면허, 음주, 인도 운행, 안전모 미착용, 속도/차선 위반, 불법 개조, 곡예/난폭운행, 소음 기준 초과, 인원 초과 탑승 등 불법적인 이륜자동차의 운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④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14일간의 자진 이동요청 공고를 하고, 미이동 시에는 해당 이륜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자동차관리법(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⑤ 교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강제 처분(매각, 재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연중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행사 등 교내 차량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은 차량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구역 정의) ① 교내 주차구역은 장애인, 비장애인, 강의교수전용, 셔틀버스전용, 소방차 전용, 납품 차량 전용, 공용차량 주차구역으로 관리한다.

② 주차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주차구역별로 주차선 색상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모든 이용자는 정해진 주차구역 내에만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에서 정하는 차량 이외는 주차할 수 없다.

④ 강의교수전용 주차구역은 교내 주차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신규건물 건립 시 해당 건물 이용자 인원을 고려하여 주차구역(공간)을 확보한다.

제12조(입출입 거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관부서는 차량의 입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 안내를 거부하고 질서를 어지럽게 해 다른 차량의 진입 및 소통에 방해되는 경우

5.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6.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차량을 훼손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제13조(벌칙) ① 교통 위반 시에는 1차 경고(경고장 스티커 부착)하고, 2시간 경과 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관리대상 차량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6개월간 교내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1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치 차량 처리 절차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④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내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출입제한을 받은 차량이 다시 위반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차량,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피해를 원상 복구하거나,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주차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피해 상당액을 배상하되, 귀책 사유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③ 손해 배상액의 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5조(면책)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차량 내에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한 분실 피해
2. 지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하는 피해
3. 학생시위, 폭동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4.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5.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하는 피해
6. 이용수칙 불이행 또는 위반하여 발생하는 피해
7.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하는 피해

### 제 3 장 기타

제16조(기타) 기타 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중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도로교통법과 포항시 조례(교통안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을 따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교통관리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